

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08호 2020. 10. 8.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회 람							
--------	--	--	--	--	--	--	--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조 례

- 제2472호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
- 제2473호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제2474호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제2475호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제2476호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8
- 제2477호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 제2478호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제2479호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37
- 제2480호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제2481호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제2482호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제2483호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47
- 제2484호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제2485호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55
- 제2486호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 제2487호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규 칙

- 제1265호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5

훈 령

-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80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2호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청양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청양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글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 및 자료수집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운영)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소식, 주요 관광지, 특산품 등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군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안전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군민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 수범 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SNS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SNS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군수는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정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진행하는 경우
4. 청양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제7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의 40%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예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친구·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
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촬영 및 보정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서포터즈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①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1. SNS 콘텐츠 생산에 대한 원고료 등 활동보상금
 2. 그 밖에 군수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3호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를 “비용을 지원하기”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위소득의 80%”를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7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7조제1호 “중위소득의 80%”를 “중위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 보험료

기준액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중 기타(1인기준)의 지원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료비: 90,800원 이내
- 해산비: 700,000원 이내
- 장제비: 800,000원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0.10.8.>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방법 등(제8조 관련)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비고
의료비 - 각종검사 및 치료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전액지원)		○ 300만원 이내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1회	○ 기납 의료비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
주거환경개선비용 (긴급을 요하는 수리)		○ 100만원이내	1회	○ 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등과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생계비(1인기준)		○ 긴급지원사업의 연도별 “생계지원의 기준” 수준내외	1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주택복구비 - 화재·재해에 의한 주택 피해 시 (고의·과실제외)	반소반과	○ 150만원이내 (공동모금회 기준)	1회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전소전과	○ 300만원이내 (공동모금회 기준)	1회	“
특별구호비 - 화재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시 (고의·과실제외)		○ 300만원이내 (공동모금회 기준)	1회	“
간병비		○ 200만원이내	1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없는 병실 사용자 제외)
기타(1인기준)		○연료비 :90,800원 이내 ○해산비 :700,000원 이내 ○장제비 :800,000원 이내	1회	○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4호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원 대상 아동”을 “지원대상아동”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해당”을 “아동복지”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과반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의 심의 사항 중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5호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법인 또는 개인 중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 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을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동
2. 차상위 계층·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 가정의 아동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센터업무 담당 과장

제1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를 “하며,”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으로 한다”를 “센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과 시설의 대표

바. 청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제12조제6호 중 “회의에 부치는 부치는 안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년”을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하는 때 또는”을 “인정하거나”로,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를 “1이상이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석

위 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6호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
양군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기관·단체연계 사업
 2. 수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
 4. 청소년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5. 군수가 위탁하는 청소년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재단의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 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군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검사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7호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일단의 산업시

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 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공업용수, 상수도·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통신·환경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4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조성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크게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조성용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자의 요청 시 군수는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입주업체의 업종변경, 업종 추가에 관

한 사항

3.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읍장·면장이 추천한 산업단지 소재 지역 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분양대상)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상 입주자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것

제15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토지의 협의매수에 응한 자 중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분양을 신청할 경우 다른 것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7조(분양계약)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분양포상금)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충청남도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한도액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 소속 공무원

원은 제외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제21조(입주자 분양대금의 정산) ① 군수는 제20조의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분양대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의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분양대금에 정산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분양대금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

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23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산업단지의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이하 “공동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 공동부담금의 수납 등에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입주자 및 지원기관과 협의 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8호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을”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를 ““지식산업센터””로, “아파트형 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등)”을 “(기금의 관리·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다만,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용자중소기업체”를 “용자 중소기업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의 사용등)”을 “(기금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8조 중 “군수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군수는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용자계획의 공고등)”을 “(용자계획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용자실시”를 “용자 실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관에게 용자 신청”을 “기관에 용자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자신청절차”를 “용자신청 절차”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용자신청서를”을 “용자신청을”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으로, “사업체”를 “사업체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금의”를 “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자)금리중 3%내외의 금리를 금융기관에게”를 “(용자)금리 중 3% 내·외의 금리를 은행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용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를 “기금 용자대상자를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내외의 위원으”를 “이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 환경보호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나.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
 - 다. 청양군 기업인협의회장
 - 라. 군내 농공단지협의회장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을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를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기금을 사업목적 외로”로, “지원자금의”를 “기금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 연도”로, “이 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회계년도”를 “회계 연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두퇴 기금운용관은 사회적경제과장”을 “두퇴, 기금운용관은 미래전략과장”으로, “기업산단팀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79호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기타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포상) 청양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0호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관리”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1호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0호의”를 “같은 조 제10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정 관리자”란 「청양군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2. 농업·임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다만, 인명피해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을 “붙여 거주지의 읍장·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입증”을 “피해증명”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다년생”을 “여러해살이”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를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허위”를 “군수는 피해 신고자가 거짓”으로, “방법 등”을 “방법”으로, “환수조치”를 “환수”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한”을 “넘는”으로, “자에 한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마리당”을 각각 “마리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는 포획내용 등 사실을 공무원, 이장, 토지주 등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9호의 서식”을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포획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공무원 또는 지정 관리자가 되며 군수가 정하는 곳에서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허가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포상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부터 5년 동안 포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방지봉사단”을 “피해방지단”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부분 중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2호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것으로써**”를 “**것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에너지**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에너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자가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녹색성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군수가**”를 “**환경부 장관이**”로 한다.

제22조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3호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청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청양군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채용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4호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나목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하며 일반음식

점영업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 기타”로 한다.

제5조 중 “발생한”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발생한”으로,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를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식품접객 따른 사업장 이용 시”를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로, “이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원금등을”을 “지원금 등을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처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변경신고)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8조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를 “내용에 대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을 “전용 수거용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를 “전용 수거용기(이하“전용 수거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시”를 “배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점 전용수거용기”를 “전용 수거용기”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를 “폐기물 배출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3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수집·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배출자”를 “전용 수거용기”로,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를 “부착하기 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를 “제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시에는”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로, “같다”를 “같이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 수거용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단체 포함)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를 “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반입처리 하고자”를 “반입 처리하고자”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
리 방법 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생 억제 방법”을 “발생억
제방법”으로, “내용등”을 “내용 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폐기물관리법」과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를 “「청양
군 폐기물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5호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청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생산품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마크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군수의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품질인증관리원"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인증마크의 품위유지와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인증마크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의 지정·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사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마크 생산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인증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의 신청 및 사용 생산품에 대한 품질 조사
4. 인증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마크의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6. 인증마크 생산품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청양사무소장

다.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심의, 조사 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장 인증마크

제12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신청) ①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제1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군수는 신청사항이 인증마크 사용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인증마크 사용자는 생산품의 품질기준 유지와 유통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인증마크 사용자는 생산품의 변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인증마크의 사용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권 정지)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권을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생산품의 관리기준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품질인증관리원의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사전 및 사후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 허가취소) ①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3.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 또는 허

용기준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생산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5. 제20조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인증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사람은 사용권이 취소된 날 부터 1년 이내에는 제13조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인증마크의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폐기 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마크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인증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인증관리원의 자격, 위촉·해촉,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후관리)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 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 지원 및 홍보) ①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마크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센터 설립) ①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 그 밖에 청양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2. 청양군수 품질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청양군수 품질인증 교육, 시험 및 연구 분석
4.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청양군수 품질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6. 청양군수 품질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청양군수 품질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증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

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인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마크 사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은 군수가 인증마크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6호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양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를 “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동년”을 “그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년도”를 “소속연도”로, “년도에 의한다”를 “연도에 의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물품을”을 “각 실·과에서 물품을”로, “주관과장”을 “각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매입·수리·제조코자하는”을

“매입·수리·제조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각 실장·과장이 제8조에 따라”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같은 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가산한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평가액”을 각각 “평가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재액”을 “기재가격”으로 한다.

제15조 중 “년도말”을 “연도말”로, “년도의”를 “연도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산물·축산물 기타”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타 특별시·도”를 “그 밖의 특별시·광역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자체”를 “청양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의 규정에 따른”을 “각 호에 따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감정 평가액”을 “영 제7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군수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을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금고 기타”를 “금고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군수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을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1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를 “정수물품”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보조부”를 “보조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매년도”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년도구분”을 “연도구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매입·수리·수선·기타의”를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으로하고,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한다.

제29조제1항 중 “군수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을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의 장”을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 품종구분 기준의 (1)비품 중 “②” 를 삭제하고, (2)소모품 ④ 본문 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0.10.8.>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삭제<2020.10.8.>
 -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다른 물품의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 원료, 재료 등)
 - ④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합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합이 비경제적인 물품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487호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2,000만원”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0만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 및 별

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단위: 천원)

구 분	지원금액	지 원 방 법	비 고
첫째	5,000	○ 출생시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4년 후 100만원 입금	
둘째	10,000	○ 출생시 200만원, 1년 후 200만원, 2년 후 200만원, 3년 후 200만원, 4년 후 200만원 입금	
셋째	15,000	○ 출생시 300만원, 1년 후 300만원, 2년 후 300만원, 3년 후 300만원, 4년 후 300만원 입금	
넷째	20,000	○ 출생시 400만원, 1년 후 400만원, 2년 후 400만원, 3년 후 400만원, 4년 후 400만원 입금	
다섯째 이상	30,000	○ 출생시 600만원, 1년 후 600만원, 2년 후 600만원, 3년 후 600만원, 4년 후 600만원 입금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규칙 제1265호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히”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로 한다.

제3조 중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자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중소기업 기업 경영안정자금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금관리운용”을 “기금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대상등)”을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금의 용자대상업체”를 “기금의 용자대상 업체”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용자신청업체”를 “용자신청 업체”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용자신청 업체가 신청한 용자 금액이 제4조의 용자계획 규모 이내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또는 청양군 기업인협의회에서 용자 지원을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평가 및 위원회 심의·결정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이

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용자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본문 중 “용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용자신청 업체의 용자신청서를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용자신청업체 및”을 “용자신청 업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용자신청업체”를 “용자신청 업체”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용자승인대상자에게”를 “용자승인 대상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제중인”을 “규제중 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발행”을 “발행한”으로, “출자총액”을 “출자 총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결정통보를 받은”을 “결정 통보를 받은 용자신청”으로, “이 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다고 인정”을 “인정”으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해당지원 결정통보”를 “해당 지원 결정 통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과하여”를 “지나”로, “일반시중은행”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를 받은”을 “용자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령 또는 법령”을 “법령”으로,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후관리기간)”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금지원을 받은 자”를 “용자승인 업체”로, “자금 지원일”을 “용자금 지원일”로, “종료후”를 “종료 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후관리내용)”을 “(사후관리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적으로 하여”를 “중점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자금”을 “용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자금지원”을 “그 밖에 용자금 지원”으로, “위하야”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문지도기관”을 “전문지도 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승인업체”를 “용자승인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승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를 “용자승인 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승인업체”를 “용자승인 업체”로,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간”을 “기업 간”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를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신청”을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으로, “적합하다고”를 “적합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를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승인신청”을 “변경승인 신청”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업체”를 “용자승인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정요구”를 “시정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도 등”을 “부도 등”으로, “개시 또는”을 “시작 또는”으로, “개시의”를 “시작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휴·폐업중”을 “휴업·폐업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원결정통보액이 전액 실효된”을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융자금의 조기회수)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원금 및 이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할 수 있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10월 8일

청양군 훈령 제318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총괄]

청양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6	333	12	106	16	25	134
정 무 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 반 직 계		595	330	12	78	16	25	134
4 급 소 계		2	1	0	1	0	0	0
지방서기관		1	1	0	0	0	0	0
지방기술서기관		1	0	0	1	0	0	0
4~5급 소 계		3	2	0	0	0	1	0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3	2	0	0	0	1	0
5 급 소 계		27	13	2	2	1	0	9
지방행정사무관		1	0	1	0	0	0	0
지방시설사무관		0	0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사무관		2	2	0	0	0	0	0
지방행정.시설사무관		3	3	0	0	0	0	0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0	0	1	0	0	0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0	0	0	0	0	0	0
지방행정.환경.시설.공업사무관		1	1	0	0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0	0	0	0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사무관		3	0	0	1	0	0	2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0	0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4	3	0	0	1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0	0	0	0	0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4	0	1	0	0	0	3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1	1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환경사무관		3	0	0	0	0	0	3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사무관	1	0	0	0	0	0	1
6 급 소 계	150	82	4	17	2	8	37
지방행정.방재안전주사	24	18	3	0	1	0	2
지방농업주사	4	4	0	0	0	0	0
지방시설주사	9	8	0	0	0	1	0
지방세무주사	1	1	0	0	0	0	0
지방전산주사	0	0	0	0	0	0	0
지방사회복지주사	4	4	0	0	0	0	0
지방녹지주사	1	1	0	0	0	0	0
지방보건진료주사	9	0	0	9	0	0	0
지방행정.시설주사	8	7	0	0	0	0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5	4	0	0	0	0	1
지방행정.전산주사	5	3	0	0	0	0	2
지방행정.환경주사	1	1	0	0	0	0	0
지방행정.세무주사	5	4	0	0	0	0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22	8	0	0	0	3	11
지방행정.녹지주사	0	0	0	0	0	0	0
지방행정.보건주사	1	0	0	1	0	0	0
지방농업.녹지주사	1	1	0	0	0	0	0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0	0	0	0	0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3	2	0	0	0	0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0	0	0	0	0	0	0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6	6	0	0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0	0	0	0	0	1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0	0	0	0	0
지방행정.보건.사회복지주사	2	0	0	0	0	0	2
지방행정.농업.사회복지주사	9	1	0	0	0	2	6
지방행정.방송통신.전산주사	2	2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2	1	0	0	0	0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2	1	0	0	1	0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0	0	0	0	1	6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	7	0	0	7	0	0	0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3	0	0	0	0	1	2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주사	1	1	0	0	0	0	0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0	0	0	0	0	0	0
지방전기운영주사	0	0	0	0	0	0	0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0	0	0	0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	0	0	0	0	0	0	0
지방사무운영주사	0	0	0	0	0	0	0
지방운전주사	2	1	1	0	0	0	0
지방위생주사	0	0	0	0	0	0	0
지방시설관리주사	0	0	0	0	0	0	0
지방방호주사	0	0	0	0	0	0	0
7 급 소 계	182	101	1	35	7	7	31
지방행정주사보	28	25	1	0	0	0	2
지방농업주사보	5	5	0	0	0	0	0
지방세무주사보	3	3	0	0	0	0	0
지방사회복지주사보	8	4	0	0	0	1	3
지방환경주사보	2	2	0	0	0	0	0
지방시설주사보	16	15	0	0	0	1	0
지방녹지주사보	3	3	0	0	0	0	0
지방공업주사보	2	1	0	1	0	0	0
지방보건주사보	9	0	0	9	0	0	0
지방간호주사보	2	0	0	2	0	0	0
지방의료기술주사보	9	0	0	9	0	0	0
지방보건진료주사보	2	0	0	2	0	0	0
지방행정.세무주사보	7	2	0	0	0	1	4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7	2	0	0	0	1	4
지방행정.전산주사보	2	2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위생주사보	11	1	0	0	0	2	8

지방행정.시설주사보	7	7	0	0	0	0	0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0	0	0	0	0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1	0	0	0	1	0
지방행정.공업주사보	2	2	0	0	0	0	0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0	0	0	0	0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보	1	1	0	0	0	0	0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4	2	0	1	1	0	0
지방수의.농업주사보	5	5	0	0	0	0	0
지방녹지.시설주사보	0	0	0	0	0	0	0
지방농업.시설주사보	0	0	0	0	0	0	0
지방보건.간호주사보	7	0	0	7	0	0	0
지방전산.시설주사보	0	0	0	0	0	0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보	0	0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보	4	2	0	1	0	0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11	3	0	0	1	0	7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보	1	1	0	0	0	0	0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6	3	0	1	2	0	0
지방전산.보건.시설주사보	3	2	0	1	0	0	0
지방시설.환경.공업주사보	1	1	0	0	0	0	0
지방보건.환경.공업주사보	2	0	0	0	2	0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전기운영주사보	0	0	0	0	0	0	0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2	0	0	0	0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0	0	1	0	0	0
지방사무운영주사보	0	0	0	0	0	0	0
지방운전주사보	3	2	0	0	0	0	1
지방위생주사보	1	1	0	0	0	0	0
지방시설관리주사보	0	0	0	0	0	0	0
지방방호주사보	1	0	0	0	1	0	0
8 급 소 계	138	70	4	20	3	5	36

지방행정서기	20	18	0	0	0	0	2
지방농업서기	3	3	0	0	0	0	0
지방세무서기	3	3	0	0	0	0	0
지방사회복지서기	7	4	0	0	0	1	2
지방전산서기	0	0	0	0	0	0	0
지방시설서기	10	6	0	0	0	0	4
지방녹지서기	3	3	0	0	0	0	0
지방공업서기	0	0	0	0	0	0	0
지방환경서기	0	0	0	0	0	0	0
지방보건서기	2	0	0	2	0	0	0
지방간호서기	4	0	0	4	0	0	0
지방의료기술서기	0	0	0	0	0	0	0
지방보건진료서기	2	0	0	2	0	0	0
지방방송통신서기	0	0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서기	13	9	0	0	0	0	4
지방행정.세무서기	4	0	0	0	0	1	3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6	4	0	0	0	0	2
지방행정.사서서기	0	0	0	0	0	0	0
지방행정.전산서기	1	1	0	0	0	0	0
지방행정.시설서기	5	4	0	0	0	0	1
지방행정.공업서기	3	1	0	0	2	0	0
지방행정.녹지서기	0	0	0	0	0	0	0
지방행정.환경서기	3	2	0	0	0	0	1
지방행정.보건서기	0	0	0	0	0	0	0
지방시설.공업서기	1	1	0	0	0	0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0	0	0	0	0
지방행정.환경.공업서기	3	3	0	0	0	0	0
지방보건.간호서기	7	0	0	7	0	0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0	0	3	0	0	0
지방농업.녹지서기	3	0	0	0	0	1	2

지방시설.방송통신서기	1	0	0	0	0	0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5	0	0	0	0	0	5
지방행정.세무.농업서기	1	0	0	0	0	0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5	2	3	0	0	0	0
지방전산.보건.시설서기	0	0	0	0	0	0	0
지방방재안전서기	0	0	0	0	0	0	0
지방전기운영서기	0	0	0	0	0	0	0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0	0	0	0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	0	0	0	0	0	0	0
지방사무운영서기	2	1	0	0	1	0	0
지방운전서기	14	1	1	2	0	2	8
지방위생서기	1	1	0	0	0	0	0
지방시설관리서기	0	0	0	0	0	0	0
지방방호서기	1	1	0	0	0	0	0
9 급 소 계	91	60	1	2	3	4	21
지방행정서기보	12	8	1	0	0	0	3
지방방송통신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농업서기보	1	1	0	0	0	0	0
지방시설서기보	5	2	0	0	0	0	3
지반환경서기보	1	1	0	0	0	0	0
지방전산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독지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행정.시설.공업서기보	14	11	0	0	3	0	0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0	0	0	0	2	2
지방사서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보건서기보	2	1	0	1	0	0	0
지방의료기술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행정.보건.시설서기보	5	5	0	0	0	0	0
지방행정.세무서기보	7	4	0	0	0	1	2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3	6	0	0	0	0	7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0	0	0	0	0
지방행정.환경.공업서기보	5	5	0	0	0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9	6	0	0	0	0	3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보	3	3	0	0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서기보	4	4	0	0	0	0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행정.농업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1	1	0	0	0	0	0
지방전기운영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기계운영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운전서기보	4	1	0	1	0	1	1
지방위생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시설관리서기보	0	0	0	0	0	0	0
지방방호서기보	0	0	0	0	0	0	0
전문경력관 소 계	2	1	0	1	0	0	0
나군	1	1	0	0	0	0	0
문화재전문요원	1	1	0	0	0	0	0
다군	1	0	0	1	0	0	0
문화재관리	0	0	0	0	0	0	0
농기계교관	1	0	0	1	0	0	0
별 정 직 계	1	1	0	0	0	0	0
6급상당 소 계	1	1	0	0	0	0	0
비서요원	1	1	0	0	0	0	0
지도.연구직 계	29	1	0	28	0	0	0
지방농촌지도관	3	0	0	3	0	0	0
지방농촌지도사	25	0	0	25	0	0	0
지방연구사	1	1	0	0	0	0	0

[별표1]

청양군 본청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계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안과	농수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총 계		333	20	30	16	17	14	23	19	37	18	16	18	25	24	30	26
정 무 직 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군 수		1															1
일 반 직 계		330	20	30	16	17	14	23	19	37	18	16	18	25	24	30	23
4 급 소 계		1	0	0	0			0	0	0	0	0	0	0	0	0	1
지방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0															
4~5급 소 계		2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2	1	1													
5 급 소 계		13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0															
지방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3						1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환경.시설.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수의사무관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시설.환경 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 사무관	0																
6 급 소 계	82	6	7	5	5	4	6	4	6	5	4	5	7	5	5	8	
지방행정.방재안전주사	18	3	2	1		1	3	2		1		2				3	
지방농업주사	4									2	2						
지방시설주사	8		2						1	1			4				
지방세무주사	1														1		
지방전산주사	0																
지방사회복지주사	4			2	2												
지방녹지주사	1													1			
지방보건진료주사	0																
지방행정.시설주사	7				1	1	2	2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2	2												
지방행정.전산주사	3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1			3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8	1					0					2		2		3	
지방행정.녹지주사	0																
지방행정.보건주사	0																
지방농업.녹지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0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6					1			2			2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0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보건.사회복지주 사	0																
지방행정.농업.사회복지주 사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전산주 사	2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	0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0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주사	1		1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0															
지방전기운영주사	0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0															
지방사무운영주사	0															
지방운전주사	1											1				
지방위생주사	0															
지방시설관리주사	0															
지방방호주사	0															
7 급 소 계	101	8	9	4	4	3	5	8	9	5	4	4	9	9	12	8
지방행정주사보	25	6	1	1	1	2	1	2	1	1		1			2	6
지방농업주사보	5									2	3					
지방세무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			2	2											
지방환경주사보	2								2							
지방시설주사보	15		4				1	2	2				6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공업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0															
지방간호주사보	0															
지방의료기술주사보	0															
지방보건진료주사보	0															
지방행정.세무주사보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2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2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위생 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7	1	1			1		1				1	2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보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2						2									
지방수의.농업주사보	5														5	
지방녹지.시설주사보	0															
지방농업.시설주사보	0															
지방보건.간호주사보	0															
지방전산.시설주사보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보	2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3		1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1				1		1		
지방전산.보건.시설주사보	2		2													
지방시설.환경.공업주사보	1								1							
지방보건.환경.공업주사보	0															
지방방재안전주사보	0															
지방전기운영주사보	0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2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0															
지방사무운영주사보	0															
지방운전주사보	2														2	
지방위생주사보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0															
지방보호주사보	0															
8 급 소 계	70	4	5	3	4	5	5	1	9	6	6	3	5	4	6	4
지방행정서기	18	4	1			4	1			2		2	1		1	2

지방농업서기	3							3						
지방세무서기	3												3	
지방사회복지서기	4		2	2										
지방전산서기	0													
지방시설서기	6	2			1	1	1			1				
지방녹지서기	3											3		
지방공업서기	0													
지방환경서기	0													
지방보건서기	0													
지방간호서기	0													
지방의료기술서기	0													
지방보건진료서기	0													
지방방송통신서기	0													
지방행정.농업서기	9					1	1	6				1		
지방행정.세무서기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4		1	2								1		
지방행정.사서서기	0													
지방행정.전산서기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4	1				1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서기	0													
지방행정.환경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0													
지방시설.공업서기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지방행정.환경.공업서기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0													
지방농업.녹지서기	0													
지방시설,방송통신서기	0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0													

지방행정.세무.농업서기	0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2					1											1
지방전산.보건.시설서기	0																
지방방재안전서기	0																
지방전기운영서기	0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0																
지방사무운영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1											1					
지방위생서기	1								1								
지방시설관리서기	0																
지방방호서기	1								1								
9 급 소 계	60	1	8	3	3	1	6	4	12	1	1	5	3	5	6	1	
지방행정서기보	8	1						1				4			1	1	
지방방송통신서기보	0																
지방농업서기보	1									1							
지방시설서기보	2		2														
지반환경서기보	1								1								
지방전산서기보	0																
지방녹지서기보	0																
지방행정.시설.공업서기보	11					1	1	2	6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0																
지방사서서기보	0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의료기술서기보	0																
지방행정.보건.시설서기보	5		4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6		1								1		3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공업서기보	5								5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6			3	3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보	3						3									
지방행정.농업.녹지서기보	4												4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0															
지방행정.농업서기보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1						1									
지방전기운영서기보	0															
지방기계운영서기보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0		0													
지방운전서기보	1														1	
지방위생서기보	0															
지방시설관리서기보	0															
지방방호서기보	0															
전문경력관 소 계	1	0	0	0		0	0	1	0							
나군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문화재전문요원	1						1									
다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문화재관리	0															
농기계교관	0															
별 정 직 계	1	0	0	0		0	1									
6급상당 소 계	1	0	0	0		0	1									
비서요원	1															1
지도.연구직 계	1	0	0	0		0	1									
지방농촌지도관	0															
지방농촌지도사	0															
지방연구사	1															1

[별표2]

청양군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계	의회사무과
총 계		12	12
정 무 직 계		0	0
군 수		0	
일 반 직 계		12	12
4 급 소 계		0	0
지방서기관		0	
지방기술서기관		0	
4~5급 소 계		0	0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0	
5 급 소 계		2	2
지방행정사무관		1	1
지방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사무관		0	
지방행정.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환경.시설.공업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0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시설.환경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사무관	0	
6 급 소 계	4	4
지방행정주사,방재안전주사	3	3
지방농업주사	0	
지방시설주사	0	
지방세무주사	0	
지방전산주사	0	
지방사회복지주사	0	
지방녹지주사	0	
지방보건진료주사	0	
지방행정.시설주사	0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0	
지방행정.전산주사	0	
지방행정.환경주사	0	
지방행정.세무주사	0	
지방행정.농업주사	0	
지방행정.녹지주사	0	
지방행정.보건주사	0	
지방농업.녹지주사	0	
지방농업.수익주사	0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0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0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0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0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0	
지방행정.보건.사회복지주사	0	
지방행정.농업.사회복지주사	0	
지방행정.방송통신.전산주사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0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	0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0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주사	0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0	
지방전기운영주사	0	
지방기계운영주사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	0	
지방사무운영주사	0	
지방운전주사	1	1
지방위생주사	0	
지방시설관리주사	0	
지방방호주사	0	
7 급 소 계	1	1
지방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업주사보	0	
지방세무주사보	0	
지방사회복지주사보	0	
지방환경주사보	0	
지방시설주사보	0	
지방녹지주사보	0	
지방공업주사보	0	
지방보건주사보	0	
지방간호주사보	0	
지방의료기술주사보	0	
지방보건진료주사보	0	
지방행정.세무주사보	0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0	
지방행정.전산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주사보	0	

지방행정.시설주사보	0	
지방행정.사서주사보	0	
지방행정.환경주사보	0	
지방행정.공업주사보	0	
지방행정.보건주사보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보	0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0	
지방수의.농업주사보	0	
지방녹지.시설주사보	0	
지방농업.시설주사보	0	
지방보건.간호주사보	0	
지방전산.시설주사보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보	0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0	
지방전산.보건.시설주사보	0	
지방시설.환경.공업주사보	0	
지방보건.환경.공업주사보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지방전기운영주사보	0	
지방기계운영주사보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0	
지방사무운영주사보	0	
지방운전주사보	0	0
지방위생주사보	0	
지방시설관리주사보	0	
지방방호주사보	0	
8 급 소 계	4	4

지방행정서기	0	
지방농업서기	0	
지방세무서기	0	
지방사회복지서기	0	
지방전산서기	0	
지방시설서기	0	
지방녹지서기	0	
지방공업서기	0	
지방환경서기	0	
지방보건서기	0	
지방간호서기	0	
지방의료기술서기	0	
지방보건진료서기	0	
지방방송통신서기	0	
지방행정.농업서기	0	
지방행정.세무서기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0	
지방행정.사서서기	0	0
지방행정.전산서기	0	
지방행정.시설서기	0	
지방행정.공업서기	0	
지방행정.녹지서기	0	
지방행정.환경서기	0	
지방행정.보건서기	0	
지방시설.공업서기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0	
지방환경.공업서기	0	
지방보건.간호서기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0	
지방농업.녹지서기	0	

지방시설.방송통신서기	0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0	
지방행정.세무.농업서기	0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3	3
지방전산.보건.시설서기	0	
지방방재안전서기	0	
지방전기운영서기	0	
지방기계운영서기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	0	
지방사무운영서기	0	
지방운전서기	1	1
지방위생서기	0	
지방시설관리서기	0	
지방방호서기	0	
9 급 소 계	1	1
지방행정서기보	1	1
지방방송통신서기보	0	
지방농업서기보	0	
지방시설서기보	0	
지반환경서기보	0	
지방전산서기보	0	
지방녹지서기보	0	
지방행정.시설.공업서기보	0	
지방사회복지서기보	0	
지방사서서기보	0	
지방보건서기보	0	
지방의료기술서기보	0	
지방행정.보건.시설서기보	0	
지방행정.세무서기보	0	
지방행정.농업서기보	0	

지방행정.전산서기보	0	
지방행정.환경서기보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0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보	0	
지방행정.농업.녹지서기보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0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지방전기운영서기보	0	
지방기계운영서기보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0	
지방운전서기보	0	
지방위생서기보	0	
지방시설관리서기보	0	
지방방호서기보	0	
전문경력관 소 계	0	0
나군	0	0
문화재전문요원	0	
다군	0	0
문화재관리	0	
농기계교관	0	
별 정 직 계	0	0
6급상당 소 계	0	0
비서요원	0	
지도.연구직 계	0	0
지방농촌지도관	0	
지방농촌지도사	0	
지방연구사	0	

[별표3]

청양군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계	보건의료원			농업기술 센터
			소계	보건 사업과	진료부	
총 계		106	75	57	18	31
정 무 직 계		0	0	0	0	0
군 수		0				
일 반 직 계		78	75	57	18	3
4 급 소 계		1	1	1	0	0
지방서기관		0	0			
지방기술서기관		1	1	1		
4~5급 소 계		0	0	0	0	0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0	0			
5 급 소 계		2	2	1	1	0
지방행정사무관		0	0			
지방시설사무관		0	0			
지방행정.농업사무관		0	0			
지방행정.시설사무관		0	0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0	0			
지방행정.환경.시설.공업사무관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0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0	0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0	0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0	0			
지방행정.농업.시설.환경사무관		0	0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사무관	0	0			
6 급 소 계	17	17	16	1	0
지방행정주사,방재안전주사	0	0			
지방농업주사	0	0			
지방시설주사	0	0			
지방세무주사	0	0			
지방전산주사	0	0			
지방사회복지주사	0	0			
지방녹지주사	0	0			
지방보건진료주사	9	9	9		
지방행정.시설주사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0	0			
지방행정.전산주사	0	0			
지방행정.환경주사	0	0			
지방행정.세무주사	0	0			
지방행정.농업주사	0	0			
지방행정.녹지주사	0	0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1		
지방농업.녹지주사	0	0			
지방농업.수의주사	0	0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0	0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0	0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0	0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0	0			
지방행정.보건.사회복지주사	0	0			
지방행정.농업.사회복지주사	0	0			
지방행정.방송통신.전산주사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0	0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0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0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	7	7	6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0	0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주사	0	0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0	0			
지방전기운영주사	0	0			
지방기계운영주사	0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	0	0			
지방사무운영주사	0	0			
지방운전주사	0	0			
지방위생주사	0	0			
지방시설관리주사	0	0			
지방방호주사	0	0			
7 급 소 계	35	33	24	9	2
지방행정주사보	0	0	0		
지방농업주사보	0	0			
지방세무주사보	0	0			
지방사회복지주사보	0	0			
지방환경주사보	0	0			
지방시설주사보	0	0			
지방녹지주사보	0	0			
지방공업주사보	1	1	1		
지방보건주사보	9	9	8	1	
지방간호주사보	2	2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9	9	5	4	
지방보건진료주사보	2	2	2		
지방행정.세무주사보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0	0			
지방행정.전산주사보	0	0			
지방행정.농업주사보	0	0			

지방행정.시설주사보	0	0			
지방행정.사서주사보	0	0			
지방행정.환경주사보	0	0			
지방행정.공업주사보	0	0			
지방행정.보건주사보	0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보	0	0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0	0			
지방녹지.시설주사보	0	0			
지방농업.시설주사보	0	0			
지방보건.간호주사보	7	7	4	3	
지방전산.시설주사보	0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보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보	1	0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0	0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보	0	0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1	0			1
지방전산.보건.시설주사보	1	1	1		
지방시설.환경.공업주사보	0	0			
지방보건.환경.공업주사보	0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0			
지방전기운영주사보	0	0			
지방기계운영주사보	0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1		
지방사무운영주사보	0	0			
지방운전주사보	0	0			
지방위생주사보	0	0			
지방시설관리주사보	0	0			
지방방호주사보	0	0			
8 급 소 계	20	20	13	7	0

지방행정서기	0	0			
지방농업서기	0	0			
지방세무서기	0	0			
지방사회복지서기	0	0			
지방전산서기	0	0			
지방시설서기	0	0			
지방녹지서기	0	0			
지방공업서기	0	0			
지방환경서기	0	0			
지방보건서기	2	2	2		
지방간호서기	4	4	3	1	
지방의료기술서기	0	0			
지방보건진료서기	2	2	2		
지방방송통신서기	0	0			
지방행정.농업서기	0	0			
지방행정.세무서기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0	0			
지방행정.사서서기	0	0			
지방행정.전산서기	0	0			
지방행정.시설서기	0	0			
지방행정.공업서기	0	0			
지방행정.녹지서기	0	0			
지방행정.환경서기	0	0			
지방행정.보건서기	0	0			
지방시설.공업서기	0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0	0			
지방환경.공업서기	0	0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3	4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1	2	
지방농업.녹지서기	0	0			

지방시설.방송통신서기	0	0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0	0			
지방행정.세무.농업서기	0	0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0	0			
지방전산.보건.시설서기	0	0			
지방방재안전서기	0	0			
지방전기운영서기	0	0			
지방기계운영서기	0	0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	0	0			
지방사무운영서기	0	0			
지방운전서기	2	2	2		
지방위생서기	0	0			
지방시설관리서기	0	0			
지방방호서기	0	0			
9 급 소 계	2	2	2	0	0
지방행정서기보	0	0			
지방방송통신서기보	0	0			
지방농업서기보	0	0			
지방시설서기보	0	0			
지반환경서기보	0	0			
지방전산서기보	0	0			
지방녹지서기보	0	0			
지방행정.시설.공업서기보	0	0			
지방사회복지서기보	0	0			
지방사서서기보	0	0			
지방보건서기보	1	1	1		
지방의료기술서기보	0	0			
지방행정.보건.시설서기보	0	0			
지방행정.세무서기보	0	0			
지방행정.농업서기보	0	0			

지방행정.전산서기보	0	0			
지방행정.환경서기보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0	0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보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서기보	0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0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0			
지방전기운영서기보	0	0			
지방기계운영서기보	0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0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0	0			
지방운전서기보	1	1	1		
지방위생서기보	0	0			
지방시설관리서기보	0	0			
지방방호서기보	0	0			
전문경력관 소 계	1	0	0	0	1
나군	0	0	0	0	0
문화재전문요원	0	0			
다군	1	0	0	0	1
문화재관리	0	0			
농기계교관	1	0			1
별 정 직 계	0	0	0	0	0
6급상당 소 계	0	0	0	0	0
비서요원	0	0			
지도.연구직 계	28	0	0	0	28
지방농촌지도관	3	0			3
지방농촌지도사	25	0			25
지방연구사	0	0			

[별표4]

청양군 사업소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사 업 소	
		계	공공시설사업소
총 계		16	16
정 무 직 계		0	0
군 수		0	
일 반 직 계		16	16
4 급 소 계		0	0
지방서기관		0	
지방기술서기관		0	
4~5급 소 계		0	0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0	
5 급 소 계		1	1
지방행정사무관		0	
지방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사무관		0	
지방행정.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환경.시설.공업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사무관		0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0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시설.환경사무관		0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사무관	0	
6 급 소 계	2	2
지방행정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	1	1
지방농업주사	0	
지방시설주사	0	
지방세무주사	0	
지방전산주사	0	
지방사회복지주사	0	
지방녹지주사	0	
지방보건진료주사	0	
지방행정.시설주사	0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0	
지방행정.전산주사.세무주사	0	
지방행정.환경주사	0	
지방행정.세무주사	0	
지방행정.농업주사	0	
지방행정.녹지주사	0	
지방행정.보건주사	0	
지방농업.녹지주사	0	
지방농업.수의주사	0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0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0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0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0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0	
지방행정.보건.사회복지주사	0	
지방행정.농업.사회복지주사	0	
지방행정.방송통신.전산주사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0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0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	0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0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주사	0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0	
지방전기운영주사	0	
지방기계운영주사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	0	
지방사무운영주사	0	
지방운전주사	0	
지방위생주사	0	
지방시설관리주사	0	
지방방호주사	0	
7 급 소 계	7	7
지방행정주사보	0	
지방농업주사보	0	
지방세무주사보	0	
지방사회복지주사보	0	
지방환경주사보	0	
지방시설주사보	0	
지방녹지주사보	0	
지방공업주사보	0	
지방보건주사보	0	
지방간호주사보	0	
지방의료기술주사보	0	
지방보건진료주사보	0	
지방행정.세무주사보	0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0	
지방행정.전산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주사보	0	

지방행정.시설주사보	0	
지방행정.사서주사보	0	
지방행정.환경주사보	0	
지방행정.공업주사보	0	
지방행정.보건주사보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보	0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0	
지방녹지.시설주사보	0	
지방농업.시설주사보	0	
지방보건.간호주사보	0	
지방전산.시설주사보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보	0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보	0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2	2
지방전산.보건.시설주사보	0	
지방시설.환경.공업주사보	0	
지방보건.환경.공업주사보	2	2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지방전기운영주사보	0	
지방기계운영주사보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0	
지방사무운영주사보	0	
지방운전주사보	0	
지방위생주사보	0	
지방시설관리주사보	0	
지방방호주사보	1	1
8 급 소 계	3	3

지방행정서기	0	
지방농업서기	0	
지방세무서기	0	
지방사회복지서기	0	
지방전산서기	0	
지방시설서기	0	
지방녹지서기	0	
지방공업서기	0	
지방환경서기	0	
지방보건서기	0	
지방간호서기	0	
지방의료기술서기	0	
지방보건진료서기	0	
지방방송통신서기	0	
지방행정.농업서기	0	
지방행정.세무서기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0	
지방행정.사서서기	0	
지방행정.전산서기	0	
지방행정.시설서기	0	
지방행정.공업서기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0	
지방행정.환경서기	0	
지방행정.보건서기	0	
지방시설.공업서기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0	
지방환경.공업서기	0	
지방보건.간호서기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0	
지방농업.녹지서기	0	

지방시설.방송통신서기	0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0	
지방행정.세무.농업서기	0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0	
지방전산.보건.시설서기	0	
지방방재안전서기	0	
지방전기운영서기	0	
지방기계운영서기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	0	
지방사무운영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0	
지방위생서기	0	
지방시설관리서기	0	
지방방호서기	0	
9 급 소 계	3	3
지방행정서기보	0	
지방방송통신서기보	0	
지방농업서기보	0	
지방시설서기보	0	
지반환경서기보	0	
지방전산서기보	0	
지방녹지서기보	0	
지방행정.시설,공업서기보	3	3
지방사회복지서기보	0	
지방사서서기보	0	
지방보건서기보	0	
지방의료기술서기보	0	
지방행정.보건.시설서기보	0	
지방행정.세무서기보	0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0	

지방행정.전산서기보	0	
지방행정.환경서기보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0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보	0	
지방행정.농업.녹지서기보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0	
지방행정.농업서기보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지방전기운영서기보	0	
지방기계운영서기보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0	
지방운전서기보	0	
지방위생서기보	0	
지방시설관리서기보	0	
지방방호서기보	0	
전문경력관 소 계	0	0
나군	0	0
문화재전문요원	0	
다군	0	0
문화재관리	0	
농기계교관	0	
별 정 직 계	0	0
6급상당 소 계	0	0
비서요원	0	
지도.연구직 계	0	0
지방농촌지도관	0	
지방농촌지도사	0	
지방연구사	0	

[별표5]

청양군 읍·면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계	소계	청양읍	소계	유남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총 계		159	25	25	134	13	14	19	14	14	14	17	15	14	
정 무 직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군 수		0	0		0										
일 반 직 계		159	25	25	134	13	14	19	14	14	14	17	15	14	
4 급 소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서기관		0	0		0										
지방기술서기관		0	0		0										
4~5급 소 계		1	1	1	0	0	0	0	0	0	0	0	0	0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1	1	1	0										
5 급 소 계		9	0	0	9	1									
지방행정사무관		0	0		0										
지방시설사무관		0	0		0										
지방행정.농업사무관		0	0		0										
지방행정.시설사무관		0	0		0										
지방행정.보건사무관		0	0		0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0	0		0										
지방행정.환경.시설.공업사무관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0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2	0		2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0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0	0		0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0		3			1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3	0		3	1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1	0		1						1			
6 급 소 계	45	8	8	37	4	4	5	4	4	4	4	4	4
지방행정주사,방재안전주사	2	0		2				1				1	
지방농업주사	0	0		0									
지방시설주사	1	1	1	0									
지방세무주사	0	0		0									
지방전산주사	0	0		0									
지방사회복지주사	0	0		0									
지방녹지주사	0	0		0									
지방보건진료주사	0	0		0									
지방행정.시설주사	1	0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	0		1						1			
지방행정.전산주사	2	0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0	0		0									
지방행정.세무주사	1	0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4	3	3	11	1	2	2	1	2	1		1	1
지방행정.녹지주사	0	0		0									
지방행정.보건주사	0	0		0									
지방농업.녹지주사	0	0		0									
지방농업.수의주사	0	0		0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1	0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0	0		0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0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0	0		0									
지방행정.보건.사회복지주사	2	0		2				1					1
지방행정.농업.사회복지주사	8	2	2	6	1		1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전산주사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	0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0	0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1	1	6			1		1	1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 주사	0	0		0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3	1	1	2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 주사	0	0		0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0	0		0									
지방전기운영주사	0	0		0									
지방기계운영주사	0	0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	0	0		0									
지방사무운영주사	0	0		0									
지방운전주사	0	0		0									
지방위생주사	0	0		0									
지방시설관리주사	0	0		0									
지방방호주사	0	0		0									
7 급 소 계	38	7	7	31	3	3	4	3	4	4	4	3	3
지방행정주사보	2	0		2			1						1
지방농업주사보	0	0		0									
지방세무주사보	0	0		0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	1	1	3		1	1				1		
지방환경주사보	0	0		0									
지방시설주사보	1	1	1	0									
지방복지주사보	0	0		0									
지방공업주사보	0	0		0									
지방보건주사보	0	0		0									
지방간호주사보	0	0		0									
지방의료기술주사보	0	0		0									
지방보건진료주사보	0	0		0									
지방행정.세무주사보	5	1	1	4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보	5	1	1	4	1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0	0		0									
지방행정.농업.위생주사 보	10	2	2	8	2			2	1		1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0	0		0									
지방행정.환경주사보	1	1	1	0									
지방행정.사서주사보	0	0		0									
지방행정.공업주사보	0	0		0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0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 주사보	0	0		0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 보	0	0		0									
지방수의.농업주사보	0	0		0									
지방녹지.시설주사보	0	0		0									
지방농업.시설주사보	0	0		0									
지방보건.간호주사보	0	0		0									
지방전산.시설주사보	0	0		0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보	0	0		0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보	1	0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보	7	0		7		2	1	1		2	1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 보	0	0		0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보	0	0		0									
지방전산.보건.시설주사 보	0	0		0									
지방시설.환경.공업주사 보	0	0		0									
지방보건.환경.공업주사 보	0	0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0		0									
지방전기운영주사보	0	0		0									
지방기계운영주사보	0	0		0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0	0		0									
지방사무운영주사보	0	0		0									
지방운전주사보	1	0		1								1	
지방위생주사보	0	0		0									
지방시설관리주사보	0	0		0									
지방방호주사보	0	0		0									
8 급 소 계	41	5	5	36	4	5	6	4	4	4	3	3	3

지방행정서기	2	0		2	1	1							
지방농업서기	0	0		0									
지방세무서기	0	0		0									
지방사회복지서기	3	1	1	2								1	1
지방전산서기	0	0		0									
지방시설서기	4	0		4	1	1		1		1			
지방녹지서기	0	0		0									
지방공업서기	0	0		0									
지방환경서기	0	0		0									
지방보건서기	0	0		0									
지방간호서기	0	0		0									
지방의료기술서기	0	0		0									
지방보건진료서기	0	0		0									
지방방송통신서기	0	0		0									
지방행정.농업서기	4	0		4		1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4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2	0		2				1	1				
지방행정.사서서기	0	0		0									
지방행정.전산서기	0	0		0									
지방행정.시설서기	1	0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0	0		0									
지방행정.녹지서기	0	0		0									
지방행정.환경서기	1	0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0	0		0									
지방시설.공업서기	0	0		0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 서기	0	0		0									
지방환경.공업서기	0	0		0									
지방보건.간호서기	0	0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서기	3	1	1	2			1				1		

지방시설.방송통신서기	1	0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5	0		5	1	1	2	1					
지방행정.세무.농업서기	1	0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0	0		0									
지방전산.보건.시설서기	0	0		0									
지방방재안전서기	0	0		0									
지방전기운영서기	0	0		0									
지방기계운영서기	0	0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	0	0		0									
지방사무운영서기	0	0		0									
지방운전서기	10	2	2	8	1	1	2	1	1	1			1
지방위생서기	0	0		0									
지방시설관리서기	0	0		0									
지방방호서기	0	0		0									
9 급 소 계	25	4	4	21	1	1	3	2	1	1	5	4	3
지방행정서기보	3	0		3								3	
지방방송통신서기보	0	0		0									
지방농업서기보	0	0		0									
지방시설서기보	3	0		3			1		1		1		
지반환경서기보	0	0		0									
지방전산서기보	0	0		0									
지방복지서기보	0	0		0									
지방행정.시설.공업서기보	0	0		0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2	2	2				1				1	
지방사서서기보	0	0		0									
지방보건서기보	0	0		0									
지방의료기술서기보	0	0		0									
지방행정.보건.시설서기보	0	0		0									
지방행정.세무서기보	3	1	1	2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7	0		7	1	1	2	1			1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0	0	0	0									
지방행정.환경서기보	0	0		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3	0		3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보	0	0		0									
지방행정.농업.녹지서기보	0	0		0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0	0		0									
지방행정.농업서기보	0	0		0									
지방방재안전서기보	0	0		0									
지방전기운영서기보	0	0		0									
지방기계운영서기보	0	0		0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0	0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0	0		0									
지방운전서기보	2	1	1	1						1			
지방위생서기보	0	0		0									
지방시설관리서기보	0	0		0									
지방방호서기보	0	0		0									
전문경력관 소 계	0												
나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문화재전문요원	0	0		0									
다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문화재관리	0	0		0									
농기계교관	0	0		0									
별 정 직 계	0												
6급상당 소 계	0												
비서요원	0	0		0									
지도.연구직 계	0												
지방농촌지도관	0	0		0									
지방농촌지도사	0	0		0									
지방연구사	0	0		0									